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-793호,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 권고 통보에 따라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: 안 제6조제3항

1) (기존) 설치하여

1) (개정)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

나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: 안 제7조제2항제5호

1) (신설) 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다.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및 심의내역 관리 강화 : 안 제7조제3항

및 제4항 신설

1) (신설)

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라. 평창군 자치법규(규칙)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 : 안 제12조

1) (기존)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

(개정) 「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5. 5. 9. ~ 2025. 5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750호, 기획예산과-8200(2025. 5. 30.)]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6951(2025. 5. 2.)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6951(2025. 5. 2.)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7342(2025. 5. 7.)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0662(2025. 10. 9.)]

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12841(2025. 8. 18.)]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**등으로기금**”을 “**등으로 기금**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운영·관리하기**”를 “**운용·관리하기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설치하여**”를 “**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**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제12조 중 “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 ”을 “ 「평창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 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<u>기금</u>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금 관리관을 두되,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<u>설치하여</u>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등으로 기금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-</p> <p>----- <u>운</u></p> <p><u>용·관리하기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설치하되 여유자금</u></p> <p><u>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</u></p> <p><u>융상품으로</u> -----.</p>

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(생략)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 사항 등

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

「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두 기
연락처	(033) 330 - 2220